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53
----------	-------

발의연월일 : 2022. 12. 29.
발의자 : 이만희 · 김용판 · 박성민
이명수 · 이양수 · 이채익
이태규 · 정우택 · 최춘식
허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 홍보 · 연구 ·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도로이용자의 법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명문화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본 법령에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법령규율체계에 있어 부자연스러워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분법하는 것이 법체계에 타당함.

더불어 도로교통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관리, 안전운전 홍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타 교통관련 공공기관들과 달리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명칭상 차별이 있음.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단은 교통안전 관한 홍보·방송, 기술의 연구·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8조).
- 라.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공단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4.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대행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교통사고의 조사 · 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 · 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6.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임원)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53조제5항 · 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 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자금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 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 ·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 · 응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응자 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월 손실을 보전(補填)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 응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 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

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공단은 도로교통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별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2호 중 “「도로교통법」 제132조”를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